

한국골재협회

(http://www.aak.or.kr)

우 134-851 서울 강동 성내 550-2 예원빌딩3층/전화(02)470-0150, 0160/전송477-7085

문서번호 골재협(기획) 2013-96

시행일자 2013. 5. 14

수신 대한건설협회장

참조 건설환경실장

제목 골재채취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	
	번호		·	
	처리 과		공	
	담당자		람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12.8.23일 이전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별도의 골재채취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3. 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을 기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골재를 유용하자는 취지였으나, 최근들어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제도권 밖에서 골재를 채취·공급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국가 정책인 골재수급계획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가 하면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적법한 허가 절차에 따라 골재를 채취·공급하는 업계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여

4. 지난 '12.2.22일 「골재채취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인 즉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12.8.23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13.1.21 시행)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선별·파쇄·세척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부수적인 골재채취로 인정하여 허가를 면해주고 그 외 골재를 외부로 채취·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하천, 바다, 육상, 산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함)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 이외의 골재를 채취(선별·파쇄·세척을 포함)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6. 귀 단체 소속 회원사들이 각종 건설공사 사업추진 시 해당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벌칙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원사에 적극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골재의 정의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

* 벌칙 조항 (골재채취법 제49조제3호)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